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3드단 이혼등

2013드단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김 (*****-*****)

주소 부산

송달장소 울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

피고(반소원고) 최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애, 이지옥

사 건 본 인 1. 김 (*****-*****)

2. 김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각 피고와 같음

변 론 종 결 2015. 1. 13.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3. 12. 1.부터 2022. 4. 10.까지는 월 1,1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4. 8. 23.까지는 월 5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1)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 2)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4박 5일간(첫날 11:00부터 마지막 날 17:00까지)

나. 장소 및 방법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와서 피고(반소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

6.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80,380,9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50,000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라.

2.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3. 12.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1인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2. 4. 28. 결혼식을 하고 같은 해 5. 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2) 원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으로 발령을 받았고 2013년 3월부터는 울산 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사건본인들과 부산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사 시기를 미루면서 음성이나 울산으로 실제 이사하지는 않았고, 원고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주말에만 부산으로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종종 느끼면서 자신이 일하는 기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으로부터 기본급과 평일연장수당 등 월 급여로 1,100,000원에서 1,500,000원 정도(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를 지급받았고, 위 월 급여와 별도로 출장비, 휴가비, 귀향비 등 경비성 임금을 별도로 수령하였으며, 매년 8월이나 12월 등 부정기적으로 상여금, 연월차수당, 격려금 등을 받았다.

4) 피고는 2011년 하반기부터 원고에게 월급이 적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하는 월급의 내용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혼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5) 반대로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가 생활비 지출이 과다하고 낭비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6) 원고와 피고는 2013년까지 위와 같은 문제로 계속 마찰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다.

7)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3. 피고의 부모님 집에 가셔도 다시 원고의 수입과 피고의 생활비 지출과 관련하여 다투었고, 결국 원고는 같은 달 30. 피고에게 휴대폰으로 "서로 못 믿고 서로 신뢰를 잃어버렸네. 관계개선도 힘들고 하니 정리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원고는 2013. 11. 19.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같은 해 12. 1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 8, 16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수입 액수 및 피고의 생활비 지출과 관련한 마찰과 부산에서 원고의 근무지역으로 이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이사 시기에 관한 이견 등으로 서로 간에 불신이 가중되긴 했으나, 위와 같은 마찰 및 이견 자체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로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는 아니었다고 할 것인데, 쌍방이 자신만의 의견이나 감정만을 내세우면서 그와 같은 문제를 진지한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각 이유 있지만,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

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1) 원고는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우측 원위부 경골 골절)로 인하여 2005. 1.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2014. 5. 15. 기준 월 1,264,000원)을 지급 받고 있다.

2) 원고는 결혼 초기 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11월경 퇴사하였고 2009년 경부터 현재까지 에서 근무하고 있다.

3) 피고는 2001. 3. 2.경부터 2010. 12. 1.경까지 대체로 어린이집 및 놀이방의 보육교사로 일하였고(수개월씩 퇴직한 경우는 몇 번 있었음), 혼인기간에 사건본인들의 육아 및 가사를 전담하였다.

4) 원·피고는 부산 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위 공동주택의 임차보증금 38,000,000원은 원고가 마련한 것이었다.

5) 원·피고는 2011. 10. 4. 부산 빌라 (이하 ' 빌라'라 한다)를 거래가액 71,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1.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5, 10, 17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대상

1)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별지 '분할대상재산 명세표' 각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3. 12. 2.경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 2,122,382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해지환급금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해지환급금 모두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2013. 11. 19.경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가 지출한 돈은 일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3. 12. 1.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아래에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기로 함),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2,300원 및 은행 예금 8,973,283원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2,300원이 존재하는 사실, 2013. 12. 2. 기준 피고 명의의 위 은행 예금 계좌의 잔액이 8,973,28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후인

2013. 11. 20. 위 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달 22. 7,000,000원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생명보험이 같은 해 12. 2. 위 예금계좌로 1,973,283원을 송금(피고의 적극 재산으로 반영한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중 일부로 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에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별도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위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위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혼인기간 중 원고의 수입이 피고의 그것보다 많았던 점,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온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지속기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혼인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연령·건강상태·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5%, 피고 45%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명의와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재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 귀속시키기로 하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적절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47,000,000원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72,203,334원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131,278,790원 × 55%, 원 미만은 버림]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47,421,785원

[= 72,203,334원 - 24,781,549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47,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친밀도가 높은 점, 사건본인들이 모두 초등학생인 딸인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된 후 원고가 사건본인들과 교류하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성별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

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연령·건강 상태·현재 생활환경 및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경제적 능력·건강상태,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5만 원씩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되고 원고가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1.부터 사건본인 김 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2. 4. 10.까지는 월 1,1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김 가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4. 8. 23.까지는 월 5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면접교섭(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성별·생활환경·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곤